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상정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원안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윤 준 의)

가.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행정자치부 세제팀-2481, 2007. 10. 4.)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정함.(안 제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대상을 「도서관법」 및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7조제6호 및 제7호)
-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의 구분 변경(승합차 → 승용차)으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까지 감면하여왔으나 적용시한(2007년)이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함. (안 제15조의2)

-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함.(안 제17조)
- 농협중앙회 등이 구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함.(안 18조의2 신설)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78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행정자치부 세제팀-2481, 2007. 10. 4.)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20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정함.(안 제4조)
-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대상을 「도서관법」 및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명확히 정함.(안 제7조제6호 및 제7호)
- 다.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의 구분 변경(승합차 → 승용차)으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까지 감면하여왔으나 적용시한(2007년)이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함.(안 제15조의2 )
- 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당

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함.(안 제17조)

마.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함.(안 18조의2 신설)

##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를 “제5조 및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17조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5. (생략)</p>	<p>제4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li> <li>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li> </ol>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 ----- ----- ----- ----- ----- ----- ----- -----.</p> <p>1.~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3. (생략)</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p>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p> <p>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p> <p>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p>	<p>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p> <p>7.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제47조제1항----- ----- -----.</p> <p>제15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2009년 12월 31일----- ----- -----.</p> <p>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p>



현행	개정안
<p>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p>
<p><u>&lt;신설&gt;</u></p>	<p>제1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u>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u>”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li> <li>2. <u>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li> <li>3. <u>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li> <li>4. <u>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u></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